

의안번호	2210008
의 퇴 인	허성무 의원
회 답 일	2025. 6. 30.
추계번호	25A2413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의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8,700만원, 2031년 1,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2,500만원(연평균 2,5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 획의 수립(안 제6조)	70	—	—	—	—	70	14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11	11	11	11	11	55	11
합 계	87	11	11	11	11	125	25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정부는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7조(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전환, 기술의 융합 및 재창조를 통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7항) ○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음(제9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3	안 제10조(지역 신산업육성과 고용활성화 시책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 1. 지역 신산업 육성과 고용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 － 2.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 － 3.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미래자동차 등 첨단기술을 통한 지역국가산업단지 발전에 관한 시책 － 4. 첨단기술과 문화공간의 융합을 통한 산업단지 재구조화 사업 － 5. 산업단지 신산업 전환을 통한 청년고용활성화에 관한 시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협력 활성화,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및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제3항)	
4	안 제11조(지역과학기술 및 인공지능·로봇 산업의 진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로봇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 1. 지역의 인공지능·로봇 산업 관련 과학기술연구·교육기관 육성 － 2.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및 인공지능·로봇 연구·개발인력의 확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학과 설치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5	안 제12조(지역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제조업 디지털 전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에서의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책을 신산업 전환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함(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제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6	안 제13조(지역국가산업단지 중심 스마트 도시 전환을 통한 지역 발전역량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전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청년들의 창업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과 고용활성화에 중점을 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7	안 제14조(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의 극복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개발·기반조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제2항)	
8	안 제15조(지역 투자 자본의 확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 균형발전 및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투자자본 확충의 일환으로 지역공공은행(지역 자본의 역외유출과 지역 간 격차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재정자립도를 증진하는 대안금융 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예산을 주요한 조달자금으로 삼아 지역사회가 공공금융기관을 소유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자산을 형성하고, 지역 내에서의 경제순환 및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은행을 말한다) 설립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재정 건전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9	안 제16조(지역산업균형발전 미래기술연구소 지정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환 등 미래기술연구의 조사·교육 및 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역산업균형발전 미래기술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미래기술연구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10	안 제17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연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음(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교사 및 학생에게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1	안 제18조(청년고용활성화 시책의 추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인재 유입과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 1.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 - 2. 지역 외 청년 인력의 유입을 위한 육아·교육·의료 등 주거환경 조성 - 3. 그 밖에 지역인재 확보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2	안 제19조(지역국가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인재확보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지역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 1.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 - 2. 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3.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 4.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3	안 제20조(지역국가산업단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4	안 제21조(지역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개발 및 운영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제1항) - 1. 해당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 2. 그 밖에 해당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15	안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 원활한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16	안 제25조(지역산업균형발전 통계 및 실태조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법」을 준용함(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과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매년 지역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6조(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
2	안 제7조(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	—
3	안 제10조(지역 신산업 육성과 고용활성화 시책 마련)	X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제조업 디지털 전환, 지역국가산업단지 중심 스마트 도시 전환을 통한 지역 발전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의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4	안 제11조(지역과학기술 및 인공지능·로봇 산업의 진흥)	X	
5	안 제12조(지역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제조업 디지털 전환)	X	
6	안 제13조(지역국가산업단지 중심 스마트 도시 전환을 통한 지역 발전역량 강화)	X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7	안 제14조(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X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제조업 디지털 전환, 지역 국가산업단지 중심 스마트 도시 전환을 통한 지역 발전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의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8	안 제15조(지역 투자 자본의 확충)	X	
9	안 제16조(지역산업균형발전 미래기술연구소 지정 등)	X	
10	안 제17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X	
11	안 제18조(청년고용활성화 시책의 추진)	X	
12	안 제19조(지역국가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인재확보 지원)	X	
13	안 제20조(지역국가산업단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X	
14	안 제21조(지역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개발 및 운영 지원)	X	
15	안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X	
16	안 제25조(지역산업균형발전 통계 및 실태조사)	X	
			○ 현재 관련 사업이 수행 중이므로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수의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와 관련된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
- 제정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현행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2] 제정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재정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제정안	세부사업(내역)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제1회추경
안 제12조(지역산업균형 발전을 위한 제조업 디지털 전환)	산업단지환경조성 (스마트그린산단촉진)	121,839	136,075	115,580	146,250
안 제13조(지역국가산업 단지 중심 스마트 도시 전환을 통한 지역 발전 역량 강화)	산업단지환경조성 (산업단지구조고도화)	188,000	161,413	276,617	230,228
안 제14조(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탄소중립설비투자지 (산업단지 탄소중립 지원)	43,000	61,400	109,500	113,700
	산업단지환경조성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	—	—	—	5,000
안 제21조(지역국가산업 단지 기반시설 개발 및 운영 지원)	산업단지환경조성 (스마트그린산단촉진)	121,839	136,075	115,580	146,250
안 제25조(지역산업균형 발전 통계 및 실태조사)	국가산단관리위탁보조(산업단지발전기반강화)	1,999	3,706	2,926	2,77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제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 비용추계 대상은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비용”으로 하며,¹⁾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5년 주기 연구용역비로 함

○ 제정안의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과 유사한 연구용역 사

1)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은 기관의 통상적인 기본경비 내에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례를 고려하여 동 계획의 수립에 7,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 유사 연구사례로는 「국가균형발전 미래 방향과 핵심의제 발굴」(산업연구원, 2021, 8,200만원), 「지속적·안정적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균형발전 재원 확보·운용 방안」(서울연구원, 2024, 4,800만원), 「지역 고용정책 평가 및 지역고용활성화 전략연구」(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8,000만원) 등
- 동 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므로 법 시행 첫해인 2027년에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에 따라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3]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70	—	—	—	—	70	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7조)

□ 비용추계 대상은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하며, 위원회 설치 비용은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금액으로 함

- 민간위원 수와 회의 개최 횟수를 곱한 값에 민간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함
- 민간위원의 수는 11명, 회의 개최 횟수는 분기당 1회로 가정
 - 안 제7조제3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제3항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2호는 지

- 역국가산업단지와 지역산업균형발전과 고용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산업·연구·교육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위원의 정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민간위원의 수는 정원의 과반인 11명으로 가정함

- 민간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25만원으로 할 경우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 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2]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 회의 설치 (안 제7조)	11	11	11	11	11	55	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